

2025년 충남대학교-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

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합의서

제1조(목적) 본 합의서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과 충남대학교가 2025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절차 및 방법 등 교섭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 정의) ①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은 “조합”, 충남대학교는 “대학”이라 한다.

② “교섭대표”는 조합 위원장과 대학 총장으로 한다.

③ 양측의 교섭대표로부터 교섭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“교섭위원장”이라 한다.

④ 양측의 교섭참가자는 “교섭위원”이라 한다.

제3조(교섭 당사자) 교섭의 당사자는 조합과 대학으로 한다.

제4조(교섭원칙) 조합과 대학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성실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교섭을 통하여 신속하고 원만한 타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제5조(교섭위원) ① 교섭위원은 조합과 대학 각 8명 내외로 한다.

② 양측의 합의에 의하여 조합과 대학 동수로 실무교섭위원을 선정하여 교섭할 수 있다.

③ 양 당사자는 교섭위원 변동 시 교섭예정일 1 근무일 전까지 상대방에 서면으로 통보한다.

④ 양측의 교섭간사는 교섭위원 중에 정한다.

제6조(교섭일정) ① 교섭회의는 격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합의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, 매 회의에서 차기 회의 일정(장소)을 협의에 의해 정한다.

② 정해진 일자에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3 근무일 전까지 상대측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.

제7조(회의진행 방식) ① 회의진행은 조합측, 대학측의 순서에 따라 교대로 주관한다.

② 양측은 필요 시 합의 하에 참관인의 교섭 참관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인원은 각 3명 내외로 한다.

③ 회의시간은 최대 2시간 내외로 하고, 내부의견 조율이나 휴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회할 수 있다.

④ 회의록은 양측 교섭간사가 작성하며, 상호확인 후 이의가 없을 시 다음 회의 시작과 동시에 양측 교섭위원장이 서명한다.

⑤ 양측은 필요 시 회의를 녹취할 수 있다. 다만, 녹취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양측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.

제8조(합의서 해석 및 기타) 합의서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결정에 따르며,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.

2025. 9. 8.

충남대학교 총장

김 정 전

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

남 중 용